

구직자를 위한 고용안전망

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

국민 취업 지원제도

이름



■ 국민취업지원제도란

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위한

소득(최대 300만원)을 결합하여 지원하는 “한국형 실업부조”

* 법적 근거 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

■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
구 분			I 유형			II 유형		
			요건심사형	선발형		특정계층 (기초생활수급자 포함)	청년	중장년
				청년	비경활			
지원대상	연령		15~69세 (청년:18~34세, 중장년:35~69세)					
	소득		중위소득 60% 이하	중위소득 120% 이하	중위소득 60% 이하	무관		중위소득 100% 이하
	재산		4억원 이하			무관		
	취업경험		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	무관	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없거나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	무관		
지원내용 * 취업시 취업성공 수당지급	취업지원서비스		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서비스 연계, 취업알선 등 제공					
	소득 지 원	구직촉진수당	구직활동(월 2회)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최대 300만원(월50만원×6개월)			-		
		조기취업성공수당	I 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(창업)시 1회 50만원 지급			-		
		취업활동비용	-			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,954천원(직업훈련 참여시)		
지원기간			12개월(6개월 연장가능)					
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자			• 생계급여수급자 • 실업급여·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•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					

- **(소득·재산)**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(①신청본인, ②신청인의 배우자, ③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, 자녀))로 공적시스템(공적자료)으로 연계되어 산정
(소득) 근로·사업·재산·이전소득이 해당
(재산) 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, 조합원입주권, 분양권, 승용자동차를 포함

* (2022년 기준 중위소득)

(단위: 원/월)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중위소득 100%	1,944,812	3,260,085	4,194,701	5,121,080	6,024,515	6,907,004	7,780,592
중위소득 60%	1,166,887	1,956,051	2,516,821	3,072,648	3,614,709	4,144,202	4,668,355
중위소득 120%	2,333,774	3,912,102	5,033,641	6,145,296	7,229,418	8,288,405	9,336,710

- **(취업경험)**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

- 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
- ② 특고,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
- ③ 사업자등록기간. 다만, 휴업신고기간,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와 사무실 없는 기간 제외
-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·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

• (특고·프리랜서 등)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,056,000원 (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)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

□ 신청방법

- **(신청방법)** 온라인 (www.kua.go.kr) 또는 관할 고용센터(방문) 연중 상시 접수
- **(제출서류)** 취업지원 신청서, 본인·가구원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※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수급자격 심사는 최대 1개월 소요 예정



전화 061-798-1903

팩스 0508-8230-0635

위치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

시내버스 커뮤니티센터하차 : 9, 1000, 1001
중마주공아파트하차 : 87, 88

